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8.

발의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엄태영
김기웅 · 구자근 · 강선영
권영진 · 이종배 · 김예지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.

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·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(안 제13조 제2항 제1호의2 등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 중 “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”를 “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감면 한다. 다만, 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,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, 농업법인 및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」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·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(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)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1의2. 한국농어촌공사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</p>	<p>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</p> <p>---.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 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<u>취득세</u> 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 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.</p> <p>1의3. ~ 5. (생략) ③ · ④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<u>취득세</u>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.</p> <p>1의3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